

공동훈련센터 기업협약서 : 기업별 작성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서

한국폴리텍II대학 안성캠퍼스(이하, “듀얼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인력공단(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제』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듀얼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7. 단독기업형 참여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Off-JT)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며,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 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제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 (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0월 6일

(듀얼공동훈련센터)

한국폴리텍Ⅱ대학 안성캠퍼스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41-12

대표자 : 김 명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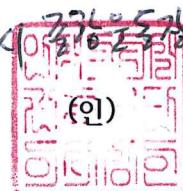


(협약기업)

미래나사(네일풀리네일)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아름동 276-237 203

대표자 : 박상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